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1
----------	----

제출년월일 : 2006. 11. 20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자의 범위를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영업장 중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기준 마련
(안 제2조제2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입법예고기간 : 2006. 10. 11 ~ 10. 31 ▷ 의견제출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 “의무사업장” 이라 한다)” 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9조의2
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
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 한다) 및 일반음식점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제1호중 “구청장” 을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으로 한다.

제6조 각 호외의 부분중 “영 제6조제3호” 를 “영 제6조제1항” 로 하고,
동조제1호중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를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규칙 제6조의3제4호” 를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 로
한다.

제15조제2항중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을 “시행규칙”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생략)</p> <p>2."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이하"의무사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p> <p>3.~6.(생략)</p>	<p>제2조 (정의) -----</p> <p>-----</p> <p>1.(현행과 같음)</p> <p>2.-----</p> <p>-----</p> <p>-----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9조의2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9조의2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같은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주로 차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 한다) 및 일반음식점 영업(영업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로 음식물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을 하는 자로 한다.</p> <p>3.~6.(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p> <p>1. 음식물류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요령에 의거 별표 1과 같이 배출하여야 한다.</p> <p>2.(생략)</p>	<p>제5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의 배출방법) -----</p> <p>-----</p> <p>-----</p> <p>-----</p> <p>1. -----</p> <p>----- 부산광역시</p> <p>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p> <p>-----</p> <p>2.(현행과 같음)</p>
<p>제6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 및 영 제6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여야 한다.</p> <p>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 재활용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p>	<p>제6조 (음식물류폐기물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처리방법등) -----</p> <p>-----</p> <p>----- 제6조</p> <p>제1항 -----</p> <p>-----</p> <p>-----</p> <p>1. -----</p> <p>-----</p> <p>-----</p> <p>-----</p> <p>-----</p>

현행	개정안
<p>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 한다.</p> <p>2.~5.(생략)</p>	<p>----- ----- <u>시행규칙</u> ----- ----- ----- -----</p> <p>2.~5.(현행과 같음)</p>
<p>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개정2003.6.25>) ① (생략)</p> <p>②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법 제13조제2항 및 영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만한다) 또는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제4항 및 규칙 제6조의3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창구 등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p>	<p>제12조 (음식물류폐기물의 수집·운반및 재활용<개정2003.6.25>) ① (생략)</p> <p>②----- ----- ----- ----- ----- ----- ----- ----- ----- ----- ----- <u>시행규칙</u> ----- ----- ----- -----</p>

현행	개정안
<p>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p> <p>①(생략)</p> <p>②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법·영·「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른다.</p>	<p>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및 절차)</p> <p>①(현행과 같음)</p> <p>②----- ----- ----- 시행규칙 ----- -----</p>